

1. 개정이유

법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현행화, 국민들이 알기 쉽게 조문 등을 정비하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법개정에 따른 현행화(안 제3조제2항)

「자연공원법」, 「부동산 등기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 등 변경

나. 용어 등 국민들이 알기쉽게 조문 정비(안 제1조, 제16조, 제23조, 별지 제6호서식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

2) 입법예고 전

3) 규제심사 전

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동법”을 “같은 법”으로 한다.

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8조제3항”을 “법 제8조제4항”으로 한다.

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법 제20조제2항 단서에서 “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.

제17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토지등기사항증명서

제18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토지등기사항증명서

제2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법 제37조제1항 단서에서 “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.

제23조제4항제9호 및 제10호 중 “당해”를 각각 “해당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2호 중 “제1호 내지 제11호에”를 “제1호부터 제11호까지”로 한다.

제28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토지등기사항증명서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자연공원법」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-- <u>같은 법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제3조(공원지정 등의 고시) ① (생략) ② <u>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자연공원의 지정 해제, 구역 축소 또는 편입의 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u> 1. ~ 7. (생략)	제3조(공원지정 등의 고시) ① (현행과 같음) ② <u>법 제8조제4항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제16조(공원사업시행 허가 생략사항) <u>법 제20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원사업을 변경시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.</u> 1. · 2. (생략)	제16조(공원사업시행 허가 생략사항) <u>법 제20조제2항 단서에서 “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.</u> 1. · 2. (현행과 같음)
제17조(공원사업시행 허가 기준 등) ① ~ ③ (생략) ④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 받은 담당 공무원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	제17조(공원사업시행 허가 기준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----- ----- -----

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
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
다. 다만, 행정기관이 아닌 공원
관리청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
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
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.

1. 토지등기부등본

2. 3. (생략)

⑤ (생략)

제18조(행위허가신청서 등) ①.

② (생략)

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
받은 담당 공무원은 「전자정부
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
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
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
다. 다만, 행정기관이 아닌 공원
관리청에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
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
한다.

1. 토지등기부등본

2. (생략)

제23조(국립공원입장료의 징수)

① ~ ③ (생략)

④ 법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라
입장료의 징수가 면제되는 자는

--. -----

-----.

1. 토지등기사항증명서

2. 3. (현행과 같음)

⑤ (현행과 같음)

제18조(행위허가신청서 등) ①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. -----

-----.

1. 토지등기사항증명서

2. (현행과 같음)

제23조(국립공원입장료의 징수)

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법 제37조제1항 단서에서 “환
경부령으로 정하는 자”란 다음

